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8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진선미·박지원·김태년

임오경 · 황명선 · 윤종군

한정애 · 김한규 · 김성회

김문수 · 서영교 · 백승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 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4항, 제45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4항).

법률 제 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협동조합연합회등의"를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5조의2(공제사업)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조합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보증사업은 제외한다.
 -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3조제4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45조 및 제45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 ●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 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합회등의-----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5조의2(공제사업) ① 제45조제 3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조합원 간 상호부조 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 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조합원들을 위하 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채 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 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 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3조(사업)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3조(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규정학	한	사항	외이	∥ 사	회적	협.	동
조합의	의 /	사업이	네 관	<u></u> 라하여	는	제4	<u> 15</u>
<u>조</u> 를	준.	용한디	}. ∘] 경	우 "	협	동
조합"	은	"사호	회적	협동조	돈합"	<u> </u>	로
본다.							

<u>제45조</u>
및 제45조의2